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8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진선미・김한규・강유정

강훈식 • 박정현 • 모경종

김영환 • 박민규 • 백승아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44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회기 및 폐회 중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다.
- ⑤ 제1항의 경위와 제4항의 국회경찰은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이 경우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이하의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회기 및 폐회 중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
	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
	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
	경찰을 둔다.
<u><신 설></u>	⑤ 제1항의 경위와 제4항의 국
	회경찰은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
	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
	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
	吏)의 직무를 수행한다.